

2024년도 「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」 추가공고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『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추가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8일

고용노동부장관·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① 사업목적

-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('24.1.27.)에 따라 인력,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
- 지역별·업종별 협동조합,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안전관리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

* 사업근거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(정부의 책무)
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16조(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)

②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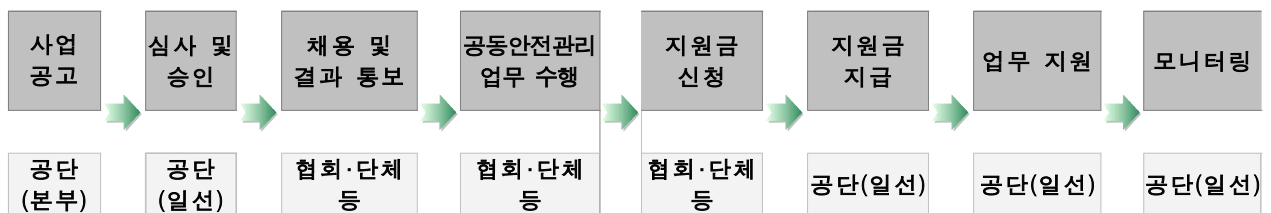
- (지원내용)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(총 운영비의 80% 수준)
 - ※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는 4대 보험료, 운영경비 등 포함
 - ※ 자부담금 20%는 협회·단체 자체기금, 협회·단체의 회원사 회비, 지자체 등 지원금, 대기업 상생 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
- (지원기간) 대상선정(채용)일 ~ '24.12월

- (지원대상) 지역·업종별 사업주 단체,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,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

※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, 공공기관, 학교는 참여불가

-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
- 공동안전관리자는 다수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되,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
- 지원 사업장수,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협회·단체 등에서 여러 명 채용가능

○ (추진 절차)



3]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

-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
-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(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)를 지정토록 하고 해당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
-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와 함께 현장 순회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을 통해 유해·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지원 등

<공동안전관리자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내용>

단계	주요 수행 내용
1단계-기반구축 (담당지지정/ 사전교육)	▶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 -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장별로 담당자 지정, 명확한 미션 부여 ▶ 안전보건교육·훈련 -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
2단계-현장안착 (담당자 역할 수행)	▶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- 담당자 조치사항 지속적 숙지 - 공동안전관리자가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(담당자 1:1 안내 후 자체 점검수행 지원) ▶ 안전관리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
3단계-안전관리체계구축 (경영자 리더십)	▶ 경영자 리더십 계발 - 사업주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관심 유도 -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안전 투자 조언 ▶ 근로자 참여 안내 - 안전제안제도 운영 - 위험성평가 참여

※ 단계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지원

- **(❶담당자 지원)**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(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)가 법적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·훈련 및 지원
- **(❷담당자 역량강화)** 담당자가 직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
 - 교육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 작성·실시 지원
 -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, 교재 준비 지원
 -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TBM 등 교육 지원
- **(❸안전관리체계)**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사고발생 주요요인을 평가하여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
 - 사업장 점검 시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현장 순회·점검 실시
 -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및 결과를 공유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중점

4 사업예산

- (사업예산) 총 120억원
- (지원금 신청)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회·단체 등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한 후 지원금을 신청(협회·단체 등→공단)
- (지원금 신청시기) 공동안전관리자를 신규 채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(협회·단체 등→공단)
 - 기존 직원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
- (지원금 신청서류) 지원금 신청 공문, 근로계약서, 지원금 지출예상대장, 4대 보험 가입내역(최근 1년)
- (지원금 신청방법) 방문, 우편(등기) 또는 E-mail로 신청
- (지원금 지급결정) 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 통지 및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
 - 공동안전관리자 월급여의 80%(최대 250만원)에 해당하는 지원금 6개월분을 선지급이 가능하고, 잔금을 연말에 정산 처리
- (중도퇴사) 공동안전관리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사 시 퇴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고 정산 이후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
 - ※ 정산 신청 시 재참여 여부를 포함하여 제출할 것
 - 재참여 시 정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결과를 제출하되, 선지급 없이 연말 정산 처리
- (정산) 연말 정산 시기, 방법 등은 공단의 지출마감 일정, 서류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시행

2. 지원자격

① 협회·단체 등 자격기준

< 대상 세부구분 >

구 분	내 용	확인서류
협동조합	「협동조합 기본법」 또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중소기업자들로 구성된 단체 * 연합회, 지역조합, 사업조합 등	·조합·사업조합·연 합회 설립인가증 및 정관
사업주단체	2인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	·(사단법인) 설립 인가증 및 정관 ·(일반등록) 고유 번호증(법인) 및 정관
협회	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원들이 협력하여 설립한 단체	
산업단지 관리 단체	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 또는 관리업무의 전부 일부를 위탁받은 단체	
기타 단체	기타 2인 이상 사업주로 구성된 비영리사업단체 등	

※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안전관리전문기관, 건설업종
협회·단체 등, 공공기관, 학교(단체)는 참여 불가

② 공동안전관리자 자격기준(사업 공고일 기준)

○ (자격) ※ 아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 실무 경력* 2년 이상 보유자
- ②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** 1년 이상 보유자
- ③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*** 보유자

* 안전실무 경력확인: 사업주(협회·단체) 대표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로 판단

** 관리감독자 경력확인: 경력증명서(대표 직인) 및 교육이수증으로 판단

*** 산업안전기사, 산업안전산업기사, 전기안전기술사, 화공안전기술사, 기계안전기술사,
산업안전지도사(전기안전, 화공안전, 기계안전)에 한함

- (전환) 공동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협회·단체 등 소속 직원, 공동안전 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직원 등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하는 경우
 -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되 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동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(위배 시 지원취소)
- (환수) 공단은 지원 협회·단체 등, 공동안전관리자 등이 지원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음

3. 참여제한

-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

협회·단체 등 (고용주)	○ 사업주 단체로 연합회, 조합, 사업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) 휴면, 해산, 휴면건의, 해산건의, 휴폐업, 파산 조합 2) 설립 이후 2회 이상 총회를 미개최한 협회·단체 등 ※ 2022년 이후 설립된 협회·단체 등은 적용제외 3) 단체의 장, 상근이사 2명 모두 공석인 조합(신청일 기준)
공동안전 관리자 (근로자)	○ 만18세 이상 (2006. 4. 9.이전 출생자)으로 기준공고일 (2024. 4. 9.) 이후 고용된 근로자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) 국비 또는 지자체 지원 인건비 사업 수혜근로자 2)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이거나, 타 기업 근무 중인 자 3) 채용 예정 단체의 장 또는 상근이사의 직계존속인 자 (직계존속은 민법에 따름) 4) 채용 예정 단체의 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참여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임직원 재직 중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○ (신청기간) 2024. 4. 8.(월) 09:00~ 2024. 4.30.(화) 17:00

*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음

* 천재지변, 사업내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별도로 공지하여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변경된 공지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osha.or.kr>) 게시 예정

○ (신청방법)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, 등기우편 또는 E-mail(jsa@kosha.or.kr)

- 제출서류(별첨 1, 2 참조)

✓ 참여신청서 1부

- 사업계획서 1부

- 정기총회 개최 증빙서류(해당 단체에 한함) 1부

-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(해당시) 1부

✓ 단체(사업자) 등록증(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) 1부

○ (신청문의)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(대표번호 ☎1544-3088)

○ (서류접수) 공단 관할 일선기관 안전업무 담당부서

공단 관할 일선기관 연락처

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번호(☎1544-3088) 및 관할 일선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또는 클린사업장 조정지원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연번	기관명(소재지)	관할 지역	대표전화
1	서울광역본부 (서울 중구 칠패로 42)	서울특별시(종로, 종로구, 동대문구, 서초구, 강남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)	02-6711-2897
2	강원지역본부 (강원 춘천시 경춘로 2370, 2층)	강원도(춘천시, 원주시, 홍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, 횡성군), 경기도(가평군)	033-815-1035
3	서울남부지사 (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, 7층)	서울특별시(영등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)	02-6924-8739
4	서울동부지사 (서울 송파구 법원로 135 소노타워 4층)	서울특별시(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종로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)	02-2086-8028
5	강원동부지사 (강원 강릉시 하슬라로 182(교동, 정관빌딩) 3층)	강원도(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양양군, 고성군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)	033-820-2512
6	부산광역본부 (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, 4~7층)	부산광역시	051-520-0683
7	울산지역본부 (울산 남구 정동로 83 4층)	울산광역시	052-226-0530
8	경남지역본부 (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)	경상남도(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,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거창군, 함양군, 함천군, 하동군, 남해군, 통영시, 고성군, 거제시)	055-269-0543
9	경남동부지사 (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4층)	경상남도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)	055-371-7556
10	광주광역본부 (광주 광산구 우진대로 282, 8, 9, 11층)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(나주시, 화순군,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장성군, 영광군, 함평군)	062-949-8727
11	전북지역본부 (전북 전주시 덕진구 간산로 251, 4층)	전라북도(전주시, 정읍시, 남원시, 완주군, 임실군, 순창군, 무주군, 진안군, 장수군)	063-240-8541
12	전남지역본부 (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, 7층)	전라남도(목포시, 신안군, 영암군, 무안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진도군, 장흥군)	061-288-8731
13	제주지역본부 (제주 제주시 연사로 473, 4층)	제주특별자치도	064-797-7513
14	전북서부지사 (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, 2층)	전라북도(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)	063-460-3625
15	전남동부지사 (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)	전라남도(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)	061-689-4956
16	대구광역본부 (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, 20~21층)	대구광역시(북구, 중구, 동구, 수성구) 경상북도(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, 군위군)	053-609-0553
17	대구서부지사 (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, 5층)	대구광역시(남구, 달서구, 서구, 달성군, 성주군, 칠곡군, 고령군)	053-650-6837
18	경북지역본부 (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-23)	경상북도(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, 영주시, 봉화군, 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의성군, 예천군, 영양군, 청송군)	054-478-8026
19	경북동부지사 (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)	경상북도(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)	054-271-2045
20	인천광역본부 (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)	인천광역시	032-5100-524
21	경기지역본부 (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, 13층)	경기도(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)	031-259-7125
22	경기남부지사 (경기 평택시 칠과길 87, 2-3층)	경기도(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)	031-690-1934
23	경기북부지사 (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, 1층)	경기도(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, 강원도(철원군)	031-828-1943
24	고양파주지사 (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-59, 805호)	경기도(고양시, 파주시)	031-540-3843
25	경기서부지사 (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, 2층)	경기도(광명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안산시, 시흥시)	031-481-7514
26	경기동부지사 (경기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17번길 3, 2층)	경기도(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)	031-785-3328
27	경기중부지사 (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19, 3층)	경기도(부천시, 김포시)	032-680-6526
28	대전세종광역본부 (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)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(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보령시, 금산군, 홍성군, 서천군, 부여군, 청양군)	042-620-5658
29	충북지역본부 (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, KT 3층)	충청북도(청주시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옥천군, 영동군)	043-230-7122
30	충북북부지사 (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)	충청북도(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)	043-849-1044
31	충남지역본부 (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215, 3층)	충청남도(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서산시, 예산군, 태안군)	041-570-3434

※ 접수장소가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osha.or.kr>)에 공지 예정

5. 선정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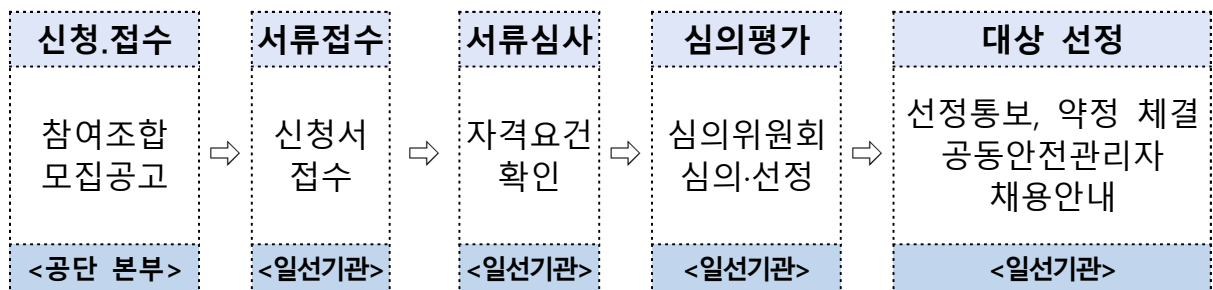
○ (선정일정) '24. 4월 ~ 5월

※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(선정방법) 공단 일선기관에서 선정심의회회를 통해 선정

- '24년 예산(120억원) 소진시까지 선정심의회회를 통해 선정
- 선정심의회회는 위원장 포함 5인이상 내·외부 심의위원 구성

○ (선정절차) 안전보건공단→협회·단체 등



○ (선정기준)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

구 분		평가항목(평가지표)	평가 기준	점수
정 량 평 가 (30)	조 합 운 영	총회 개최 여부 (5) (최근 2년 '22~'23년)	2회 이상 정상 개최	5
			2회 미만 개최	2
		단체의 장, 상근이사 공석 여부 (5) (사업 신청일 기준)	공석 없음	5
			1인 공석	0
	공 동 사 업 (30)	조합연혁 (5) (사업 신청일 기준)	설립인가후 15년 이상	5
			설립인가후 12년~15년 미만	4
			설립인가후 9년~12년 미만	3
			설립인가후 6년~9년 미만	2
			설립인가후 3년~6년 미만	1
			설립인가후 3년 미만	0

정 성 평 가 (70)		법정 발기인수 대비 조합원 (5) (사업 신청일 기준)	증가율 100% 이상	5
			증가율 80% 이상 100% 미만	4
			증가율 60% 이상 80% 미만	3
			증가율 40% 이상 60% 미만	2
			증가율 20% 이상 40% 미만	1
			증가율 20% 미만	0
		공동사업 수익 총액 (10) (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)	사업수익 3억원 이상	10
			사업수익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9
			사업수익 5천만 이상 1억원 미만	8
			사업수익 1천만 이상 5천만원 미만	7
			사업수익 1천만원 미만	6
	채용 및 사업 추진 (70)	공동사업 현황 및 신규 채용 필요성 (30)	매우 우수	30
			우수	25
			보통	20
			미흡	15
			매우 미흡	10
		채용 후 직무수행 및 동 사업 추진 계획 (30)	매우 우수	30
			우수	25
			보통	20
			미흡	15
			매우 미흡	10
		근로환경, 교육훈련 복지제도 등 (10)	매우 우수	10
			우수	9
			보통	8
			미흡	7
			매우 미흡	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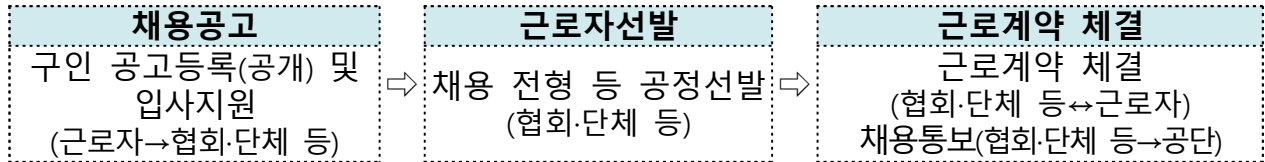
○ (결과발표) 선정심사 후 결과를 공단 일선기관 홈페이지에 발표
(선정 협회·단체 등에 개별 통보)

※ 평가결과에 대한 점수는 비공개함

6. 기타사항

① 전문인력 채용(공동안전관리자→협회·단체 등)

○ 채용 절차



○ 채용 통보 시기: 근로자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(협회·단체 등→공단)

* 근로개시 이후에 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, 해당 근로자 사업 참여 취소

○ 채용 통보 서류

협회·단체 등	○ 공문 및 근로자 채용 통보서 ※ 개인 정보는 가림처리(주민번호 뒷자리) ○ 공동안전관리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,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1부
공동안전관리자	○ 공동안전관리자(개인)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※ 개인 정보는 가림처리(주민번호 뒷자리) ○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관한 동의서

○ 근로 조건

- 1) 4대 보험 필수 가입
- 2) 공동안전관리자의 근무는 협회·단체 등과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유연근무제 또는 탄력근무제 적용 가능
- 3) 근로계약서는 첨부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
- 4) 급여는 '24년 최저임금 (시급 9,860원, 월급 2,060,740원) 이상 지급
- 5) 휴식시간,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며, 기타 이외 사항은 참여조합 취업규칙,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조건이 사업 참여 기준과 다를 경우 지원 불가

② 공동안전관리자 교육(안전보건공단→공동안전관리자 전문인력 교육 과정 운영)

○ 전문인력 교육은 채용 후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하여 진행

< 교육내용 및 시간(안) >

교육내용	교육시간(hr)
계	40
산업안전보건법령,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	4
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	20
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	4
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	4
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	2
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	6

[별첨 1] 참여 신청서

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

단체명	예시) OO협의회	대표자명 (생년월일)	홍길동 (1900.00.00)
소재지	(00000) 서울광역시 중구 00번길 0000	전화번호 (FAX)	02-0000-0000 (02-0000-0000)
사업자(단체) 등록번호	000-00-000000	단체 설립일	0000.00.00.
신청지역 (수행희망)	() 광역본부 / 지역본부 / 지사	채용인원 (예정)	00명 (신규채용 00명, 직원전환 00명)
참여단체 현황	협회·단체 등 유형	채용인원(예정) 현황	
	☐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단체 ☐ 중소기업중앙회 소속단체(연합회, 사업조합 등) ☐ 전국 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☐ 전국 산업단지관리기관협의회 ☐ 전국 상공회의소 ☐ 기타 협회·단체 등(직접기재)	☐ 산업안전 실무 2년 이상: 00명 ☐ 관리감독자 경력 1년 이상: 00명 ☐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* 보유: 00명 * 산업안전기사, 산업안전산업기사, 전기안전기술사, 화공안전기술사, 기계안전기술사, 산업안전지도사(전기안전, 화공안전, 기계안전)에 한함	
2024년도『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』을 수행하고자 공모 참여를 신청합니다.			
		2024년	월 일
단 체 명 :			
대 표 자 :		(직인)	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0광역(지역) 본부장 귀하			
▶ 첨부 서류 붙임			
1. 사업계획서 및 단체(사업자) 등록증 또는 단체 증빙서류 각 1부 .			

※ 신청지역은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공단 일선기관명 【광역본부, 지역본부, 지사로 구분】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따른 고지내용	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	사업 참여자 확인 및 지원대상 심의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	- 필수정보 : 대표자 성명, 연락처(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), 생년월일
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:	10년
4.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동의 거부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이 될 수 도 있습니다.	
☐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	

[별첨 2]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

1 기본현황

단체명	예시) OO협의회	대표자명 (생년월일)	홍길동 (1900.00.00)		
소재지	(00000) 서울광역시 중구 00번길 0000	전화번호 (FAX)	02-0000-0000 (02-0000-0000)		
사업자(단체) 등록번호	000-00-000000	단체 설립일	0000.00.00.		
조합원수 (회원사수)	최초(설립일 기준)	00000명/ 000개사			
	현재(서류 제출일 기준)	00000명/ 000개사			
신청 지원금 (운영비 80%)	예시) 60,000,0000원				
임원 현황	(대표) 홍길동 (OO이사) 홍길순 (OO이사) 홍길석 (OO이사) 홍길태.....				
조직도	그림첨부				

② 주요 활동연혁 및 공동사업 현황

총회 개최 현황 (‘22년~’23년)	주요안전 내용
2022. 00. 00.	예시) 조합비 인상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참여여부 결정 투표 등....
2022. 00. 00.	
2022. 00. 00.	
2023. 00. 00.	
.	
.	

’23년 공동사업명	수익금액(천원)	발주처	사업내용
총 합 계	500,000천원	-	-
00산업단지 녹지조성사업	100,000천원	00시청	예시) 00산업단지 내 녹지조성사업 수행
.	.	.	
.	.		
.	.		
.	.		

③ 인력 운영계획 및 지원금액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자격구분	지원금액* (천원)
1	예시)김동일	1980.1.10	관리감독자 1년이상	
2	예시)김동이	1983.7.10	산업안전실무 2년이상	
3	예시)김동삼	1989.8.15	산업안전기사	
4	예시)채용예정	-	-	
5				
6				

* 지원금액은 운영비용의 80% 임

4 사업추진 세부계획(분량 제한 없음)

1. 참여 개요 및 사업 필요성(휴먼명조 14p, 글간격 130~160% 준수)

<필수 작성>

협회·단체 등 소속 지역	0000시 0000군	주요 업종	예시) 금속제품 제조업
협회·단체 등 회원사 (개소)	0000개소	회원사 근로자수(명)	총 0000명
공동안전관리자(1인)당 관리 회원사(개소)		0000개소	

- 내용 작성① 신청지역의 산업 특성분석, ② 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, ③ 사업의 필요성

※ 중고딕(12P)

2.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추진계획 및 직무수행 세부내용(휴먼명조 14p, 글간격 130~160% 준수)

- 내용 작성①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세부내용, ② 채용계획, ③ 직무 및 역할)

※ 중고딕(12P)

3. 근로환경, 교육훈련, 복지제도 등 운영내용(휴먼명조 14p, 글간격 130~160% 준수)

- 내용 작성① 공동안전관리자 근무여건, ② 교육훈련계획, ③ 복지제도 운영)

※ 중고딕(12P)

※ 관련 증빙자료 첨부

※ 관련 증빙자료 첨부

※ 관련 증빙자료 첨부

[별첨 3]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

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

기 관	소 재 지	관 할 구 역	지방노동관서
서울광역본부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중구·종로구·동대문구·서초구·강남구·용산구·마포구·서대문구 및 은평구	서울지방노동청, 서울강남·서울서부지청
강원지역본부	춘 천 시	강원도 춘천시·원주시·홍천군·인제군·화천군·양구군 및 횡성군, 경기도 가평군	강원·원주지청
서울남부지사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영등포구·양천구·강서구·관악구·구로구·금천구 및 동작구	서울남부·서울관악지청
서울동부지사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성동구·광진구·송파구·강동구·중랑구·노원구·강북구·도봉구 및 성북구	서울동부·서울북부지청
강원동부지사	강 릉 시	강원도 강릉시·속초시·동해시·태백시·삼척시·양양군·고성군·영월군·정선군 및 평창군	태백·강릉지청, 영월출장소
부산광역본부	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	부산지방노동청, 부산동부·부산북부지청
울산지역본부	울산광역시	울산광역시	울산지청
경남지역본부	창 원 시	경상남도(경상남도 김해시·밀양시·양산시 제외)	창원·진주·통영지청
경남동부지사	양 산 시	경상남도 김해시·밀양시·양산시	양산지청
광주광역본부	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·화순군·곡성군·구례군·담양군·장성군·영광군 및 함평군	광주지방노동청
전북지역본부	전 주 시	전라북도 전주시·남원시·정읍시·장수군·임실군·순창군·완주군·진안군 및 무주군	전주지청
전남지역본부	목 포 시	전라남도 목포시·무안군·영암군·강진군·완도군·해남군·장흥군·진도군 및 신안군	목포지청
제주지역본부	제 주 시	제주특별자치도	광주지방노동청 (제주근로개선과)
전북서부지사	군 산 시	전라북도 익산시·김제시·군산시 및 부안군·고창군	익산·군산지청
전남동부지사	여 수 시	전라남도 여수시·순천시·광양시 및 고흥군·보성군	여수지청
대구광역본부	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 중구·동구·북구·수성구, 경상북도 영천시·경산시 및 청도군, 군위군	대구지방노동청
경북지역본부	구 미 시	경상북도 구미시·김천시·영주시·상주시·문경시·안동시·칠곡군·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봉화군·예천군·의성군·영양군·청송군	구미·영주·안동지청
대구서부지사	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 서구·남구·달서구·달성군, 경상북도 칠곡군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)·고령군 및 성주군	대구서부지청
경북동부지사	포 향 시	경상북도 포항시·경주시 및 영덕군·울릉군·울진군	포항지청
인천광역본부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	중부지방노동청, 인천북부지청
경기지역본부	수 원 시	경기도 수원시·용인시·화성시	경기지청
경기북부지사	의 정 부 시	경기도 의정부시·동두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양주시·포천시·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	의정부지청
고양파주지사	고 양 시	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	고양지청
경기중부지사	부 천 시	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	부천지청
경기서부지사	안 산 시	경기도 광명시·안양시·과천시·의왕시·군포시·안산시 및 시흥시	안양·안산지청
경기동부지사	성 남 시	경기도 성남시·하남시·이천시·광주시·여주시 및 양평군	성남지청
경기남부지사	평 택 시	경기도 평택시·오산시·안성시	평택지청
대전세종광역본부	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·논산시·계룡시·보령시 및 금산군·홍성군·서천군·부여군·청양군	대전지방노동청, 보령지청
충북지역본부	청 주 시	충청북도 청주시·진천군·괴산군·보은군·증평군·옥천군 및 영동군	청주지청
충남지역본부	천 안 시	충청남도 천안시·아산시·당진시·서산시 및 예산군·태안군	천안지청, 서산출장소
충북북부지사	충 주 시	충청북도 충주시·제천시 및 단양군·음성군	충주지청